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소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977

발의연월일: 2024. 8. 20.

발 의 자:소병훈·윤종군·한민수

장종태 · 안태준 · 이병진

서영석 • 권칠승 • 허 영

이재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법률 제6619호 「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」 부칙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「국민건강 보험법」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 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금액기준이 해당 연도의 예상 보험료수입액을 기준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 매년 보험료수입액이 과 소 추계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.

이에 지원의 기준을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6으로 바꾸려는 것임(안 제25조의2 신설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97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2(기금사용의 특례)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기금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전전년도 보험료수입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108조의2제4항의용도에 사용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.

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<u> </u> | 제25조의2(기금사용의 특례) 보건 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기금에서 「국 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전전년 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6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108조의2제4항의 용도에 사 용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. |
|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②(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) 보 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「국 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당해연 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 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108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 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 험공단에 지원한다. 다만,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 |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< <u>삭 제></u> |

과할 수 없다.